

의안번호	2220101
의 퇴 인	오세희의원
회 답 일	2026.7.28.
추계번호	26B37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의3 (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u>3.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 사용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u>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조의3 (재정적 지원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나 자금 융자 등을 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현행법 제10조의3¹⁾에 따라 「다회용기 재사용

1)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촉진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례식장·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다회용기의 보급 및 세척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도 해당 사업의 예산은 157억 2,000만원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장례식장·결혼식장 등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의 재활용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규사업의 추진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해당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지원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2. 다회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